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7. 3. 12
도시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3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영등포구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나. 주요골자

o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조례안 제2조)
-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이 됨.
o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조례안 제3조)
-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o 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조례안 제5조)
본부장은 재해기간(6.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o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조례안 제6조)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 본부장과 차장이 됨.
- 위원은 재해관련기관(구, 경찰서, 향토사단, 교육구청, 전신전화국, 한전, 소방서,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및 기타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한 기관)의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
o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조례안 제7조)
-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 유 재 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써 긴급 재해시 대비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한 운영 처리로 피해를 극소화하며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법 근거에 준하여 제정하였다고 보아지나 조례 제2조3항 통제관은 건설국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치수과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제관을 총무국장(각 국장 및 보건소장 협조)으로 하고 담당관을 치수과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수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해 상황에 따라 소관 과장이 담당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제5조(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의 재해기간을 6. 15 ~ 10. 15로 하였는데 재해가 이 기간에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없고 연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해기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6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3항의 내용중(이하 재해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5급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을 말한다)을 1호~12호까지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여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4. 修正案의 要旨

가. 수정이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직원의 동원 및 파견을 총괄 운영해야 되므로 총무국장이 통제관으로 되어야 하며,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과장을 관련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기간에서 6. 15 ~ 10. 15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매년 그 기간에만 재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재해기간으로 하여야 마땅할 것이므로 일자의 표시는 삭제하고, 재해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공무원외의 인원도 있으므로 자구에 있어 공무원 등으로 표시하여야 되며, 6조 3항에서 재해관련 기관의 명칭과 직급까지 각 호별로 중복 표시되었으며, 6조 3항의 조문을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로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ㅇ 통제관 및 담당관의 변경 (제2조 3항)
- ㅇ 재해기간의 삭제 및 자구 삽입 (제5조)
- ㅇ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제6조 3항)

5. 審査結果 : 수정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109 호

제안년월일 : 1997. 3. 12
제 안 자 : 이일희 위원외 7인

1. 수정이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직원의 동원 및 파견을 총괄운영 해야 되므로 총무국장이 통제관으로 되어야 하며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관을 관련 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 기간에서 6. 15 ~ 10. 15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매년 그 기간에만 재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재해기간으로 하여야 마땅할 것이므로 일자의 표시는 삭제하고, 재해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공무원외의 인원도 있으므로 자구에 있어 공무원 등으로 표시하여야 되며, 6조 3항에서 재해관련기관의 명칭과 직급까지 각 호별로 중복 표시되었으며,

6조 3항의 조문을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로 함.

2. 수정주요골자

- 통제관 및 담당관의 변경(제2조 3항)
- 재해기관의 삭제 및 자구 삽입 (제5조)
-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제6조 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3항중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 치수과장(설해시는 토목과장)이 되고"를
"통제관은 총무국장 담당관은 관련 과장이 되고"로 한다.

안 제5조중
"공무원 파견"을 "공무원 등 파견"으로
"재해기간(6. 14 ~ 10. 15)에"를 "재해기간"으로만

안 제6조3항중
"(이하 재해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 치수과장(설해시는 토목과장)이 되고 ……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통제관은 총무국장 담당관은 관련과장이 되고 ……
제5조(재해기간 공무원 파견 근무 요청)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해기간 공무원 등 파견 근무 요청)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 등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재해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 급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13호 (생략)	1~13호 (제정안과 같음)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직원의 동원 및 파견을 총괄운영 해야 되므로 총무국장이 통제관으로 되어야 하며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관을 관련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기간에서 6. 15 ~ 10. 15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매년 그 기간에만 재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재해기간으로 하여야 마땅할 것이므로 일자의 표시는 삭제하고 재해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공무원외의 인원도 있으므로 자구에 있어 공무원 등으로 표시하여야 되며,

6조 3항에서 재해관련기관의 명칭과 직급까지 각 호별로 중복 표시되었으며, 6조 3항의 조문을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로 함.

나. 수정주요골자

- 통제관 및 담당관의 변경(제2조 3항)
- 재해기관의 삭제 및 자구 삽입 (제5조)
-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제6조 3항)

5.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109

제출년월일 : '97. 2. 1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영등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2. 주요골자

① 재해재책본부의 조직(조례안 제2조)
-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이 됨.

② 재해재책본부의 기능(조례안 제3조)
-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③ 재해기간 공무원 파견 근무 요청(조례안 제5조)
- 본부장은 재해기간(6. 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재해재책본부 회의의 구성(조례안 제6조)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됨.
- 위원은 재해관련기관(구, 경찰서, 향토사단, 교육구청, 전신전화국, 한전, 소방서,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및 기타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한 기관)의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

⑤ 재해재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조례안 제7조)
-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법률 제4993호, 1995. 12. 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 제15033호, 1996. 6. 21)
- 구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 : 치수12101-924('96. 7. 31)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합의사항 : 없 음
라. 조 례 안 : 별 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 치수과장(설해시는 토목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 개해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는 사항
4. 제1호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 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재해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구 (관련국장)
2. 영등포경찰서 (과장)
3. 구로경찰서 (과장)
4. 노량진경찰서 (과장)
5. 제213연대 (대대장)
6. 남부교육청 (과장)
7. 여의도전화국 (부장)
8. 영등포전화국 (부장)
9. 영등포소방서 (과장)

10. 한국전력 영등포지점 (부장)
11. 서울도시가스 (부장)
12. 영등포수도사업소 (과장)
13.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 법 제11조제4항의 조례에서 정하는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당연직위의 자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수당)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